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
----------	-----

2011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2일 양준욱 의원외 11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양준욱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설치·운영하여 왔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시설이 2008년 4월에 폐쇄되어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9년 기준 3,447톤/일 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하여 서울시내 공공처리시설 4개소(강동·도봉·서대문·동대문 처리용량 788톤/일)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민간위탁처리 시설(사료·퇴비화)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표 1〉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011. 1. 31 현재)

구 분	시설명 (위 치)	처리용량 (톤/일)	운영방법 (운영자)	비 고
사료화	강 동 (고덕동)	240	민자유치 ((주)나엔)	강동구의 5개구 (강남, 광진, 동작, 성동, 중랑)
	도 봉 (도봉동)	150	자치구 직영	도봉구
퇴비화	난 지 (난지물재생센터내)	300	민간위탁 (이에이텍)	서대문, 용산, 마포, 고양시
혐기성 소화	동대문환경자원센 터	98	민자유치 (서희건설)	동대문구
사료화	송파	450	민자유치 (리클린)	송파구(시험가동 중)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해당 자치구¹⁾에서 제정·운용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에 설치·운영하던 "하수병합-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²⁾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가동되었으나, 시설의 노후(내구연한 3년초과)에 따른 수선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시설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져 2008년 4월 가동을 중단하였음

〈표 2〉 서남 하수병합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서남물재생센터내) ○ 부지 및 건물면적 : 부지 840㎡, 건물 512㎡ ○ 시설규모 : 하수병합처리시설 20톤/일(강서구 음식물쓰레기 반입) ○ 준 공 일 : 2001. 6. 5(연구용 시설로 건설) ○ 건 설 비 : 1,124백만원 ○ 시설운영 : 민간위탁-(주)효성('08.4.25 운영중단)

- 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는 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1) 도봉구, 강동구, 서대문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탈수-발효과정을 거쳐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하수처리장 소화조에 투입하여 함께 처리하는 방식

※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1.~7.(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 다.(생략)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발의연월일 : 2010년11월 2일

발 의 자 : 양준욱 의원외 11명

1. 폐지이유

-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설치·운영하여 왔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시설이 2008년 4월에 폐쇄되어 그 운영·관리를 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